

여비규정

제정 : 1992. 7. 7.	제11차개정 : 2009. 3. 20.
제1차개정 : 1993. 9. 28.	제12차개정 : 2010. 10. 21.
제2차개정 : 1995. 3. 30.	제13차개정 : 2011. 2. 25.
제3차개정 : 1996. 5. 6.	제14차개정 : 2013. 12. 11.
제4차개정 : 1997. 6. 1.	제15차개정 : 2014. 12. 23.
제5차개정 : 1999. 6. 1.	제16차개정 : 2015. 11. 6.
제6차개정 : 2002. 4. 1.	제17차개정 : 2016. 12. 1.
제7차개정 : 2003. 5. 22.	제18차개정 : 2019. 7. 1.
제8차개정 : 2004. 4. 21.	제19차개정 : 2020. 12. 3.
제9차개정 : 2004. 10. 6.	<u>제20차개정 : 2024. 6. 7.</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공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로 국내 및 국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계산기준)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 정액 이외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행여비) 직원이 임원 또는 상위 직위 직원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1급 본부장의 여비) 1급 본부장의 여비는 임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별정직원의 여비) 별정직원에 대하여는 그 대우에 상당하는 직위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임직원 외의 여비) ① 임직원 외의 자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의 여비는 임직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해당 직위의 결정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계약인력은 팀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 적용은 배제한다.
- ③ 임직원이 국내외 주요 회의에 우리나라 또는 공사를 대표하여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여행 시에는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 교통비 및 식비
 2. 국외여행 시에는 그 임직원에 해당하는 교통비, 숙박비 실비와 일비, 식비의 각 2분의 1

제9조(여행 중 직위변경 시의 여비) 여행 중 직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여행 중 여비변경 시의 여비) 여행 중 이 규정 및 「여비규정시행요령」의 개정 등으로 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남은 여행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지출증빙서류) ① 실비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Invoice, Bill 등)와 영수증(Receipt)을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자발행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승차권, 탑승권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③ 숙박비를 실비정산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숙박업소명, 투숙자명, 객실 종류, 투숙기간 등이 포함된 숙박사실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한 경우 숙박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교통비 및 숙박비의 정산) ①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교통비 및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제출한 지출증빙서류의 보완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제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출결의부서) ① 여비는 출장자의 소속 부서에서 지출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임여비의 경우 국내 부임은 책임 부서, 국외 부임은 부임 전 부서에서 각각 지출결의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밖의 부서에서 여비를 지출결의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여비

제15조(국내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및 이전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교통비) ①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는 국토교통부장관 인허요금(통행 세포함)을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등급이 없을 때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시 공사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그 구간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일비, 식비, 숙박비) ① 일비,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을 지급한다.

②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③ 동일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일비는 현지 도착 다음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액의 3할을 각각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60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여비의 공제) 임직원의 국내여행시 출장 관계기관이나 공사가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여비 산출액에서 동 보조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9조(국내 재근지내 출장) ① 임직원의 국내 재근지내 출장에 따른 출장비는 소속 팀장 전결 하에 정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국내 재근지내 출장”이란 본사 및 수도권 소재 국내지사는 수도권 내의, 그 밖의 국내지사 및 출장소는 관할지 내의 당일 귀임 국내 출장을 말한다.

제20조(부임여비) ① 부임의 명을 받아 국내에서 근무지를 변경(이하 “전근”)하는 임직원에 대해 교통비 실비 및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 행정구역(시·군 기준)내 전근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전근한 경우에는 새 근무지로 거주지를 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제21조(이전비) ① 전근한 임직원이 부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동일 행정구역(시·군 기준)내이거나 임직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근한 임직원이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이사 실비를 이전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본지사 예정발령 등 부임의 명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족여비) ① 전근한 임직원이 부양가족을 이주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배우자 및 12세 이상 동반가족 : 본인에 해당하는 교통비 실비 및 일비·식비·숙박비 상당액

2. 12세 미만 동반가족 : 본인에 해당하는 교통비 실비 및 일비·식비의 각 2분의 1 상당액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속과 26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으로 동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3조(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①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사무인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본직 또는 전직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공무여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이전 근무지 까지 본직 또는 전직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망자 및 사고자의 여비) ① 공무여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여행 중 발병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를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그 밖의 자 1인에 대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퇴직자의 전거여비) ① 정년 또는 공사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가 퇴직일 60일 이내에 생활근거지 또는 본거지로 실지 전거한 경우에는 전직 상당의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한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신규채용자의 여비) 신규채용자(「인사관리규정」 제53조제2항에 의한 신규채용자 제외)에 대하여는 임용장 발급지로부터 부임지까지의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을 때의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그 가족의 거주지로부터 부임지까지로 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7조(국외여비의 종류) 국외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기타경비 및 이전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28조(적용기준) ① 국외여비는 육로에 의할 때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는 본국 공항 발착일을 각각 기준하여 적용한다.

② 국외여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교통비)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는 운임 등급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통행세를 포함한다. 다만,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여 항공편이 아닌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원과 동등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30조(일비 및 식비)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일비 정액의 2할을, 여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일비 정액의 3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1조(숙박비) ① 숙박비는 기내박(선박포함)을 제외하고 실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 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 또는 항공기 탑승시간이 짧아시간대이고 업무 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일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기타경비) ① 국외여행하는 본인과 그 가족의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출입국세, 여행자보험료, 예방접종비와 풍토병 예방약구입비 등 여행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국제전화 사용, 도서자료 구입, 통역서비스 이용 등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사전에 출장 승인권자가 승인한 한도 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장 업무의 원만한 수행 또는 상호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지역에 출장하는 출장단별로 한도 내에서 출장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부임여비) 본국과 국외지사(주재원 포함, 이하 동일), 국외지사간 부임의 경우 부임 소요일수에 대하여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제34조(이전비) 국외 또는 본국으로 전임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35조(가족여비) ① 국외 또는 본국으로 전임한 자가 부임 시에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본인의 부임 전 또는 부임 후 이주시킬 때에는 출국 및 귀국 각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배우자 및 12세 이상 동반가족 : 본인에 해당하는 교통비 실비 및 일비·식비·숙박비 상당액

2. 12세 미만 동반가족 : 본인에 해당하는 교통비 실비 및 일비·식비의 각 2분의 1 상당액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26세 미만의 미혼자녀 및 전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거하고 있는 부모를 말한다. 다만, 자녀에 대한 귀국 시의 여비는 국외근무자의 본국 부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여비의 공제) 임직원의 국외여행 시 출장 관계기관이나 공사가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여비 산출액에서 동 보조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37조(국외근무자의 여비) ① 국외지사 근무자의 임지 국내·외 출장 시에는 제3장의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국 출장 시 본국 체재기간(본국 도착 다음날부터 출발전일까지)의 여비는 제2장의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국외지사 근무자의 국외 재근지내 출장 시에는 제30조에 따른 일비 및 식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외 재근지내 출장”은 국외지사 관할지 내의 당일 귀임 출장을 말한다.

제38조(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①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직 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근무 또는 여행 중 휴직 또는 퇴직한 자가 30일 이내에 귀국할 때에는 본인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근무지 또는 휴직, 퇴직의 통지를 받은 곳으로부터 본국까지의 본직 또는 전직 상당의 귀국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가족여비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9조(사망자 및 사고자의 여비) ① 임직원이 국외근무 또는 국외공무여행 중 사망한 때, 유족이 운구 등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의 자에 대하여 본인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근무지에 가족을 동반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30일 이내에 귀국할 때에 한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여행 중 발병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를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그 밖의의 자 1인에 대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0조(여비보조) ①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가족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지 휴양하는 경우에는 왕복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근무 본국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하 동일)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 중 1인에 대한 본국 왕복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근무 본국 임직원 및 가족이 주재국의 낙후된 의료여건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근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 1인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긴급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사장은 복지담당 부서장, 국외지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임직원 및 가족을 대피·철수시키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직원 및 가족이 국외여행 전·후로 본국 또는 주재국의 방침에 따라 지정된 시설(호텔 등 숙박시설 포함)에 격리되는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비규정시행요령」으로 정한다. 다만, 직위의 구분은 「인사관리규정시행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199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199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